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
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
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희귀수목,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1조 ~ 안 제5조, 안 제13조)
- 나.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12조)
- 다. 일부 조항의 신설(안 제3조제4호, 제5호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